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31

발의연월일: 2021. 1. 4.

발 의 자:고용진·강선우·권칠승

김경만 · 김교흥 · 김영배

맹성규 · 박성준 · 안규백

양정숙 • 윤미향 • 이광재

이성만 · 이탄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 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일정한 수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가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강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 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사용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 ⑥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6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1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 ④ (생 략)	사용제한) ① ~ ④ (현행과 같
	승)
<u> <신 설></u>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
	성장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
	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u><신 설></u>	<u>⑥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u>
	<u>따른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u>
	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
	<u>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u>
	하는 소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제91조제5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휴
	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